

## 1. 개정이유

소관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의 유효기간이 2024.5.31.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 설정

1) 2027.5.31. 까지 유효기간 설정

\*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은 유효기간으로 설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안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훈령 제1729호

##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국토교통부훈령 일부개정안

「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(유효기간) 중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0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5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30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5월 31일</u>----- -----.</p>